

# 예 산 총 칙

200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440,170,831	13,205,125
일반회계	396,875,440	11,906,263
특별회계	43,295,391	1,298,862
기타특별회계	43,295,391	1,298,862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29,574	3,887
종합장사시설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3,966,566	418,997
수질개선 특별회계	66,411	1,992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3,370,000	101,100
주차장 특별회계	323,900	9,717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3,903,940	417,118
기반시설 특별회계	505,000	15,150
석유비축기지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11,030,000	330,90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사업예산"과 같다.

제 3 조 계속비 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405,839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 할 수 있다.